

-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5. 4. 11 ----- 이현택의원의 6인
- 나. 회 부 일 자 : 2005. 4. 11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05.4.25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이현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005.1.27)으로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(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2항)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 삭제(제3조 삭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 개정 조례안은 2005. 1. 27일 「지방자치법」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회의 일수를 조정 하므로써 지방의회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의정수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